

##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

의안  
번호

458

제출연월일 : 2001년10월 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세계의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근로자의 삶에 대한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전용공간이 요구되어
- 노후된 충주시 노동회관을 철거하고 명실상부한 근로자 종합 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따라
- 이에 따른 재산의 처분 감소사유가 발생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 및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

### 2. 주요골자

#### 재산의 처분

〈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을 위한 재산처분〉

- 위 치 : 충주시 충의동 14번지 외 3필지
- 규 모 : 토지 : 866㎡ (4필지)
- 재산가액 : 411,283천원(재산가액은 개별 공시지가 가격임)

※ 신축계획(충주시)

- 연면적 : 730평(지하 1층, 지상 3층)
- 사업비 : 2,956백만원(국비 1,153, 도비 250, 시비 1,553)

## 3. 예산상황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재산의취득	재산의처분	교환취득	교환처분	비 고
충주시 근로자 종합복지관 신축		411,283			토 지

## 4.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: 별첨

## 5. 관계법령 : 별첨

- 지방재정법 제77조, 제78조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
-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9조

#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서

## 2001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7-1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필지, m<sup>2</sup>, 천원)

구 분		당 초			변 경			합 계			
	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건수	수량	금액	
취 득	계	토지									
		건물	1	5,000	5,000,000				1	5,000	5,000,000
		기타									
	매 입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 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기 타	토지										
	건물	1	5,000	5,000,000				1	5,000	5,000,000	
	기타										
처 분	계	토지			4	866	411,283	4	866	411,283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매 각	토지			4	866	411,283	4	866	411,283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	교 환	토지									
		건물									
		기타									
기 타	토지										
	건물										
	기타										

## 200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(7-2)

[회계명 : 일반회계]

(단위 : m<sup>2</sup>, 천원)

일련 번호	재 산 표 시			추정가액	처 분 시 기	처 분 사 유	재산취득 소 유 자 주소,성명	비 고
	지목	소 재 지	수 량					
계	토지		866	411,283	2001. 10			
	건물							
	기타							
1	토지	충주시 충의동 14	391	411,283	2001. 10	충주시 근로자종합 복지관 신축	충주시	
		" 16	154					
		" 22	245					
		" 23	76					
	건물							
기타								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### [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]

지 방 재 정 법	지 방 재 정 법 시 행 령
<p>제77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 <p>제78조(공유재산심의회)①공유재산의 취득·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</p> <p>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/p>	<p>제84조(공유재산의관리계획)①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.</p> <p>②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·처분으로 한다. 이 경우 토지에 있어서는 제2호에 규정된 면적 이하 일지라도 제1호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포함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).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.</li> <li>2.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),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 이상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)</li> </ol>

## [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시행규칙]

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	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
<p>제37조(공유재산관리계획)①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·처분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.</p>	<p>제29조(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)①조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공유재산관리계획서(별지 13호서식)</li> <li>2 ~ 5호 생략</li> </ol>